



한·미 FTA와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

李 銘 活 (研究委員, 3705-6262)

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진출을 위한 상업적 주재 유인은 감소하는 반면, 외국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산업을 핵심 선도산업으로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- 최근 한·미 FTA 협상과정에서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.
 -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란 현지법인이나 지점 형태 등의 상업적 주재 없이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.
- 현행법상 상업적 주재(commercial presence)에 기반을 둔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대부분 개방된 상황이며,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자산운용사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음.
 - 국내에서 인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해외의 자산운용사에게 해외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함.
 - 해외의 외국자산운용사는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간접투자증권(외국펀드)을 국내 판매대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.
 -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의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업적 주재 없이 국경간 거래를 영위할 수 있음.
 - 다만,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서비스 및 개인에 대한 투자자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.
- 한편, 미국은 주요국과의 FTA 협정을 통해 자국의 자산운용회사가 상대국내에서 상업적 주재 없이도 펀드를 설정·등록하고, 등록된 펀드에 대해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.
 - 미국-호주 FTA 협정 내용에 따르면 자국의 자산운용회사가 상업적 주재 없이도 상대



국에서 등록된 펀드(CIS: Collective Investment Scheme)에 대해 투자자문과 자산 운용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미국-칠레, 미국-바레인의 경우에도 미국-호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FTA 협정이 체결된 바 있음.

■ 반면 미국-싱가포르간 FTA 협정의 경우, 펀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서비스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, 자산운용업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서비스 제공은 허용하고 있음.

- 싱가포르는 미국 자산운용업자가 펀드(CIS: Collective Investment Scheme)가 아닌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자(manager of CIS)에 대해 싱가포르내 상업적 주재 없이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.
- 반면, 미국은 싱가포르 자산운용회사가 미국내 상업적 주재 없이도 미국에서 등록된 펀드(CIS: Collective Investment Scheme)에 대해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경간 거래를 완전 허용하였음.

■ 한·미 FTA에서 국내설정 펀드에 대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진출을 위한 상업적 주재 유인은 감소하는 반면, 외국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- 국내설정 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 및 자본이득세(capital gains tax) 면제 등 펀드관련 세제혜택이 부여되어 상업적 주재 없이도 외국자산운용사의 펀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.
- 아울러 외국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서 자사상품 직판이 가능해져 경쟁우위에 있는 외국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음.
- 반면, 외국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을 위한 상업적 주재 유인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산운용 관련 선진금융기법의 전수 및 확산 가능성이 낮아지고, 자산운용산업을 핵심 선도산업으로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국경간 거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- 만일 불가피하게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자산운용 관련 국경간 거래를 자산운용업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서비스 공급으로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- 아울러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펀드 설정시 국내 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고 국내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